

규약 변경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템플턴 재팬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변경 사항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2. <u>CLASS C 수익증권</u>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3. 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4. CLASS C-I 수익증권: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p> <p>5. CLASS C-F 수익증권: (이하 생략)</p>	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2. <u>CLASS C1 수익증권</u>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3. <u>CLASS C2 수익증권</u>: CLASS C1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</p> <p>4. <u>CLASS C3 수익증권</u>: CLASS C2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</p> <p>5. <u>CLASS C4 수익증권</u>: CLASS C3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</p> <p>6. <u>CLASS C5 수익증권</u>: CLASS C4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</p> <p>7. 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8. CLASS C-I 수익증권: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p> <p>9. CLASS C-F 수익증권: (이하 생략)</p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</p> <p>2. <u>CLASS C 수익증권</u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</p> <p>2. <u>CLASS C1 수익증권</u></p> <p>3. <u>CLASS C2 수익증권</u></p> <p>4. <u>CLASS C3 수익증권</u></p>

	<p><u>3.</u> CLASS C-e 수익증권</p> <p><u>4.</u> CLASS C-I 수익증권</p> <p><u>5.</u> CLASS C-F 수익증권</p>	<p><u>5.</u> CLASS C4 수익증권</p> <p><u>6.</u> CLASS C5 수익증권</p> <p><u>7.</u> CLASS C-e 수익증권</p> <p><u>8.</u> CLASS C-I 수익증권</p> <p><u>9.</u> CLASS C-F 수익증권</p>
<p>제25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</p>	<p><u>(신설)</u></p>	<p><u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(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한다.</u></p> <p><u>1.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1 에서 CLASS C2 로 전환</u></p> <p><u>2.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에서 CLASS C3 로 전환</u></p> <p><u>3.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에서 CLASS C4 로 전환</u></p> <p><u>4.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에서 CLASS C5 로 전환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. 다만,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요청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추가매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전환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추가매수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전환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</u></p> <p><u>⑥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</u></p>

	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제30조(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<u>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</u>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
제39조(보수)	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(이하 생략)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20%</u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2. CLASS C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50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	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(이하 생략)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90%</u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2. CLASS C1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50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<u>3. CLASS C2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40%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u></p> <p><u>4. CLASS C3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30%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u></p> <p><u>5. CLASS C4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20%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u></p>

	<p>3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36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4. CLASS C-이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5. CLASS C-F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	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6. CLASS C5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1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7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8. CLASS C-이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 <p>9. CLASS C-F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9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 %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(신설)	④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전환의 경우 제25조의2 제6항을 적용한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p>	<p>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</p>

	<p>③ <u>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</u>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u>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<u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<p>③ <u>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</u>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<부칙> 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</p>	<p><u>(신설)</u></p>	<p><u>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<부칙> 제2조(판매보수 일괄인하 관련 적용 예외)</p>	<p><u>(신설)</u></p>	<p><u>수익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보수율을 인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

3. 효력 발생일

2011년 01월 10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(주)